

◆ 편집위원회 규정 ◆

- 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학회에서 발간하는 정기 간행물의 관한 업무를 관할하기 위하여 설치된 편집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.
- 제2조 (구성)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- (1) 위원장 1명.
 - (2) 간사 2명.
 - (3) 위원 약간명.
- 제3조 (위촉) (1) 위원장과 간사는 편집이사 중 학회장이 위촉한다.
(2)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위촉한다.
- 제4조 (임기) 위원장, 간사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, 위원장은 위원의 교체 및 보완을 학회장에 건의할 수 있다.
- 제5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한다.
- (1) 정기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
 - (2) 논문 투고 규정에 관한 사항
 - (3) 논문 심사 규정에 관한 사항
 - (4) 기타 이사회에서 건의한 편집에 관한 사항

부 칙

- 제1조 (적용) 이 규정은 2001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◆ 논문심사규정 ◆

(제정 2013. 8. 30)

- 제1조 논문(연구논문, 속보, 단신 및 총설)의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.
- 제2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. 단, 편집위원장이 저자로 된 논문은 편집간사에게 심사위원 선정을 위촉한다.
- 제3조 ① 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 3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
② 논문의 심사절차는 심사위원 1명의 포맷심사와 2명의 내용심사로 나누어 진행한다.
③ 포맷심사는 본 학회지의 논문투고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, 포맷이 맞지 아니한 경우 저자에게 즉시 반려하여 수정을 요구하거나, 편집위원이 실험결과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할 수 있다.
④ 편집위원의 포맷심사 및 수정 결과에 대하여 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제4조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표하지 아니한다.
- 제5조 ①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 후 2주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, 심사의견을 원고와 함께 본회에 발송해야 한다.
② 제1항에 정한 기일 내에 심사 결과가 본회에 도착하지 아니할 때에는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독촉할 수 있으며, 독촉 후 1주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도착하지 아니할 때에는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.
- 제6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저자에게 그 사본을 발송한다.
- 제7조 심사 결과는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아니한다.
- 제8조 심사 결과는 게재가(무수정 채택, 수정 후 채택), 조건부 게재가(수정 후 재심사), 및 게재불가의 3종으로 구분한다.
- 제9조 심사위원 중 1명이 게재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제4조의 심사위원에게 그 심사평을 첨부하여 심사를 의뢰한다.
- 제10조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아래의 어느 한 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 “게재불가”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- ① 독창성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
 - ② 원고 내용에 저자가 알지못한 사실 또는 착상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
- 제11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최종게재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.
- 제12조 심사위원 위촉시 약간의 심사료를 지불한다. 심사료는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매년 당해년도 심사료를 결정한다.

부 칙

- 제1조 이 규정은 2001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